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1

발의연월일: 2020. 9. 10.

발 의 자:조응천·조오섭·김교흥

박영순 • 박상혁 • 진성준

장경태 · 홍기원 · 김회재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재건축의 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의 예외를 인정받는 조합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을 인정받을 수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진단기관의 선정은 시·도지사들이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 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 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필요한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시·도에서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부실 작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조·제13조·제140조, 제12조의2·제113조의4 신설).
-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두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해서는 벌칙규정을 둠(안 제39조·제72조·제73조 및 제136조).
- 다.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안 제45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입안권자"를 "입안권자(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를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등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안전진단의 실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진단 실시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해당 안전진단을 의뢰한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자에게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기준, 실시기관, 지정절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12조의2제5항"으로,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을 "결정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등"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5조제6항 본문 중 "출석"을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제6항 본문 중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 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 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2.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가.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 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인정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3호 중 "제72조제6항 본문"을 "제72조제6항"으로 한다. 제1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3조의4(안전진단기관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 5항 후단 및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안전진단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안전진단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12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36조제7호 중 "제72조"를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은 자제1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 2.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 3.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및 제113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신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6항 및 제73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신청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가해당 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제72조제6항 및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 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입안권자(시장, 군수 또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 는 구청장등은 제외한다. 이하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 이 조에서 같다)-----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 시하여야 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 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 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 <u>단 신설></u> 우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 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 ⑦ ------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u>대상·</u> 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 및 |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u>설>

나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행과 같음)

-----대상ㆍ기 준・실시기관・지정절차・안전 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12조의2(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 기가 도래하였거나 제12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 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 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현지조사를 통하 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안전진단 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진단 실 시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제12 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 단을 의뢰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 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 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 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해당 안 전진단을 의뢰한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을 실 시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 에게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알 려야 한다. ⑤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제3 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안전진단의 대상, 기준, 실 시기관, 지정절차, 안전진단 결 과보고서의 작성 및 수수료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 군수, 구청장등 은 제12조의2제5항-----

-----결정내용

<u>과보고서를</u> 제출하여야 한다.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u>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
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
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
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현

② <u>시·도지사는</u>
③ (현행과 같음) ④
<u>\]</u>
<u>장, 군수, 구청장등</u>
<u>시</u> <u>장, 군수, 구청장등은</u>
<u><단서 삭제></u>
⑤ (현행과 같음)

략)

-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 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 되. 상속 · 이혼으로 인한 양도 •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 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행과 같음)
②
,
1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 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 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 전하는 경우

- 2. ~ 5. (생략)
- ③ (생략)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
 -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 설>

한정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에
 서 같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출석(제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
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⑦ (생략)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 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 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 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 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 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 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 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_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 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 으로 본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먹	당하는	경우	-에는

<단서 삭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1.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2.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 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

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 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 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 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 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 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 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 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 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 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u>제72조제6항 본문</u>에 따라 분 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4. (생략)
- ②·③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제72조제6항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4(안전진단기관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5항 후단 및 제12조의 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안전진 단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2조의 2의 안전진단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입찰참가를 제한하려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 사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 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 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 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 수 사실을 은폐한 자

<신 설>

8. (생략)

제140조(과태료) ① 제113조제2항 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 • 2. (현행과 같음)
<u>2</u> 의2. 제119조제3항에 따른 정
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현행과 같음)
제136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7
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u> </u>
7의2. 제7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
지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은 자
8. (현행과 같음)
제140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한다.

한다.

- 1. 제12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 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 실하게 작성한 자
- 2.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
 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
 실하게 작성한 자
- 3.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

 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